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86

발의연월일: 2024. 7. 24.

발 의 자:최은석・박충권・송언석

고동진 • 이인선 • 최수진

김성원 • 박상웅 • 구자근

강대식 의원(10인)

제안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활성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및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안 104조의24 및 제118조의2).

주요내용

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안 제10조제1항)

2024년 12월 31일 과세연도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15% p씩 상향함.

- 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24조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까지 3년 연장함.
-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 5년 연장하고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 2년 연장(안 104조의24 및 제118조의 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4년"을 "2026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상당하는 금액"을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 리라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세연도에"를 "과세연도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본문 중 "과세연도에"를 "과세연도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과세연도에"를 "과세연도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로 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년"을 "8년"으로,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6년"을 "8년"으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 · 인력개발비에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 ①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 · 인력개발비"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2026년--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 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 구 · 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 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 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신설>

			-
			_
			-
			-
			-
			-
			-
			-
			-
			-
			-
			-
가.			_
			-
			-
			-
			_
			-
			_
			-
	는 금액. 다만, 202		
	월 31일이 속하는		
	도부터 2026년 12월	월 31 일	<u>릴</u>
	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의	<u> 기</u>

나. (생 략) ② ~ ⑥ (생 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등 명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중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 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 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 00분의 5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과세연

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 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공제한다.

- 1. 2. (생략)
-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 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 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 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

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 2) (생략)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 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도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속
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1.・2. (현행과 같음)
3
가
과세연
도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u>.</u>
1) • 2) (현행과 같음)
나
과세연
도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 ⑤ (생 략)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 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한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		
			_		
		/ 구] 긔]		φ.)	
		(현행			
104조	들의24	1(해외	진줄기	기업의	국
내복	귀에	대한	세액	감면)	1 -
0000	ı -l				
<u> 2029</u>	<u>년</u>				

- 1. 2. (생략)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 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 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 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 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 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 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 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 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 고, 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 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 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1. • 2. (현행과 같음)
②
<u>8년</u>
<u>5년</u>
<u>.</u>
③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 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 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 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 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 세연도(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 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 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 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 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 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 음 3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 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 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 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 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013
<u>8년</u>
<u>5년</u>
<u>o c</u>

④ ~ (7) (생 략)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제1
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
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
설하기 위하여 <u>2024년</u> 12월 31
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 ④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u>2029년</u>
<u>.</u>
1.•2. (현행과 같음)
② ~ ⑷ (현행과 같음)